

# 예산총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1,163,771	8,734,913
일반회계	266,285,417	7,988,563
특별회계	24,878,354	746,350
기타특별회계	24,878,354	746,350
상수도특별회계	10,552,283	316,56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34,228	22,02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53,713	40,6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39,523	16,186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11,433,607	343,00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50,000	7,500
기반시설특별회계	15,000	450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45,099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직무수행경비
3. 법정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5. 재해대책 및 복구비